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정부부처간 사전조율 아쉬워

글 · 이 만 덕 |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최근 석유판매업체들은 느닷없이 CENOX라는 상품명을 가진 유사휘발유가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그 유통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CENOX란 제품은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 등을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공급할 수 없는 유사휘발유라고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2002. 6월경 동제품이 시중 주유소를 통하여 유통되기 시작하자마자 정유사를 비롯한 대리점, 주유소등에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일부 주유소는 이 제품을 구입하여 주유기로 판매함에 따라 산자부는 동제품은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제조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고, 관련 주유소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동제품의 정상적인 주유소를 통한 공급이 어렵게 되자 제조사는 동 제품을 “연료첨가제”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과장 선전하면서 말통이나 다른 용기로 판매소, 도로변에서나 심지어는 카센터, 세차장, 문방구 등지에서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있다.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연료첨가제”라는 정의와 근거가 법령의 미비점에서 제기되었음을 시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편 행자부(예방과)는 “위험물취급소”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위험물 취급소”로 허가해 주어야 되고 판매여부는 소방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나 동제품을 도로변에서 용기판매하거나 문구점, 할인마트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위험물이라는 안전성 문제로 소방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CENOX 유통실태는 우리협회가 각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대담을 통해서 인정한 사실이지만 당초에 동제품이 출현되었을 시에 관계부처가 심도있게 검토하여 유사휘발유 유통에 관련한 정부에 입장을 사전 조율하였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석유류 세금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유사휘발유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대체연료개발 의지를 새로이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산자부)는 제조업자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법원에 송치된 현재 상황과 국세청의 과세조치로 어느정도 법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지만 문제는 지금도 제품이 은밀한 가운데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탈루되는지 우려가 없을 수 없다 하겠다.

다행히 최근 산자부가 석유수급조정 명령을 시달함으로써 CENOX 제조 주원료인 솔벤트의 유통경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휘발유 생산단계에서 원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향후 석유유통산업의 기본적인 골격을 재검토하여 유사한 형태의 유사휘발유의 공급의 여지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소비자의 Need를 잘 조화하여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철저히 막는 방안을 강구하여 두어야겠다고 하겠다.

이번일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유사 석유제품의 예외없는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소비자들에게는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석유류 세금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유사휘발유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대체연료개발 의지를 새로이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최선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 참여자로서 석유류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

